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4. 06.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 (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도총무과-3559(2004.5.25)】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23조제1항 “별표3”중 출산 구분란의 일수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중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중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중무시간은 13시로 한다.

현행	개정안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이상 6월미만</td><td><u>4</u></td></tr><tr><td>6월이상 1년미만</td><td><u>7</u></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u>10</u></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u>13</u></td></tr><tr><td>3년이상 4년미만</td><td><u>16</u></td></tr><tr><td>4년이상 5년미만</td><td><u>19</u></td></tr><tr><td>5년이상 6년미만</td><td><u>22</u></td></tr><tr><td>6년이상</td><td><u>23</u></td></tr></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td><td><u>3</u></td></tr><tr><td>-----</td><td><u>6</u></td></tr><tr><td>-----</td><td><u>9</u></td></tr><tr><td>-----</td><td><u>12</u></td></tr><tr><td>-----</td><td><u>14</u></td></tr><tr><td>-----</td><td><u>17</u></td></tr><tr><td>-----</td><td><u>20</u></td></tr><tr><td>-----</td><td><u>21</u></td></tr></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	<u>3</u>	-----	<u>6</u>	-----	<u>9</u>	-----	<u>12</u>	-----	<u>14</u>	-----	<u>17</u>	-----	<u>20</u>	-----	<u>21</u>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재직기간	연가일수																																				
-----	<u>3</u>																																				
-----	<u>6</u>																																				
-----	<u>9</u>																																				
-----	<u>12</u>																																				
-----	<u>14</u>																																				
-----	<u>17</u>																																				
-----	<u>20</u>																																				
-----	<u>21</u>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출산</td><td>배우자(처)</td><td><u>1</u></td></tr></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처)	<u>1</u>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출산</td><td>배우자</td><td><u>3</u></td></tr></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u>3</u>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처)	<u>1</u>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u>3</u>																																			

